

[별지 제24호서식]

기 관 명

호 발 제 호 19 . . .

수 신 (신고(신청)의무자)

본 적

주 소

제 목 추완 최고

1. 사건본인 ○○○에 대한 19 . . . 신고 ○○신고는 흠결이 있어 호적기재를 할 수 없아오니 19 . . . 까지 이를 추완하시기를 최고합니다.
2. 위 기한내에 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시·읍·면장 ○○○

직인

4101-1-16A  
1970.1.14 승인

190mm×268mm  
(신문용지 50g/m<sup>2</sup>)